

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(안)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'97. 8. 20

나. 회부일자 : '97. 8. 20

3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 촉진기본법,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

4. 주요골자

- 지역정보화의 촉진
 -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
 - 지역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
 -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구성 운영
- 지역정보화 본부 설치 및 운영
- 전산정보 자료의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등 관리이용
- 업무 정보화 및 표준화, 정보화 교육 등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안을 검토한 바,

이는 세계화, 정보화 시대를 맞아 지역정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역정보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

그 주요골자로는

첫째, 지역정보화의 촉진을 위해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, 지역정보화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함.

둘째, 지역정보화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지역 종합정보센터 및 지역정보화 본부를 설치 운영함

셋째, 전산 정보자료의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등 관리이용

넷째, 공무원과 지역주민의 정보화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지역정보화 교육계획의 수립 등

이렇게 다변화·세분화 되어 홍수처럼 밀려드는 각종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연계, 정보통신산업 육성 등 지역정보화 사업의 촉진을 기하고 지방자치단체,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제해결이나 지역의 발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됨.